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4월 23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22.(금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4. 22.(금)	담당부서	산업디지털전환추진팀
담당과장	김종연 팀장(044-203-4541)	담 당 자	채은실 주무관(044-203-4548)

「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토론회」 개최

▸ **산업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상황 중간점검**

- 他 법과 관계설정, 산업데이터 가치산정, 계약 유형 등 상세 기술

▸ **해외 입법 동향 및 시사점 논의**

- EU 데이터법 발의 동향과 국내 기업 영향·대응 논의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, 이하 산업부)는 4월 22일(금) 한국생산성본부에서 **「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토론회」**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.

○ 이날 토론회는 **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(이하 가이드라인) 제정 상황**을 **중간점검**하고, **해외 입법 동향과 그에 따른 국내 시사점**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【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토론회 개요 】

○ **일시/장소** : '22.4.22(금) 15:00~17:00 /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실(서울시 종로구)
○ **참석자** : 산업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장, 이동진 서울대 교수(워킹그룹 위원장),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워킹그룹, 기업 전문가 등

□ 산업부는 금년 **7월 시행 예정인 「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」**에 따라 **산업 데이터 거래·활용을 촉진**하기 위한 목적으로 **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계약상 필요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**할 계획으로,

○ 지난 3월부터 각 분야별 **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워킹그룹***을 구성하여 가이드라인 제정 중이다

* **(위원장)** 이동진 서울대 교수, **(위원)** 법무법인, 회계법인, 학교, 연구소, 기업 등 전문가 43명

가이드라인 제정 중간점검

□ 가이드라인 워킹그룹은 **총괄, 산업, 국외 등 총 3개 분과로 구성**되어 제정 작업중으로,

○ **'총괄분과'**는 계약 유형에 따른 **全 주기별 쟁점사항**,
'산업분과'는 자동차, 조선 등 **주요 업종별 사례 분석과 장애요인 분석**,
'국외분과'는 **데이터의 국내외 이전**을 중점 검토중이다.

□ 현재 제정 중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,

① 「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」과 他 법령과의 관계 및 적용

- 산업 데이터 생성 및 활용에 관한 용어 정의, 사용·수익권 귀속 원칙 등 **전반적인 사항은 산업부 가이드라인을 적용**하되,

- 산업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**'개인정보'**는 **개인정보보호법**, **'지식재산권'**은 **저작권·부정경쟁방지법 등** 他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을 상세 기술

② 산업 데이터 가치 산정 및 대가 제공 방식

- 산업 데이터 생성 원가, 구매수요, 시장유형(완전경쟁, 과점, 독점) 등을 고려한 **데이터의 가치 평가 방법*** **및 대가 제공방식****에 대해 상세 기술

* 원가 접근법(데이터 생성 원가), 시장 접근법(유사 거래 실적), 수익 접근법(미래 예상 소득)
** 정액제(이용량에 관계 없이 금액 고정), 종량제(이용량에 따라 금액 산정), 혼합방식

③ 산업 데이터 계약의 유형

- 데이터 생성·거래·이용 측면을 고려하여 **3가지로 분류***하고 각 **유형별 쟁점사항(이용권한, 이익배분, 영업비밀 등)**을 상세 기술

* 데이터 제공형: 보유 중인 데이터를 상대방에게 제공(양도, 이용허락 등)하는 경우
데이터 창출형: 복수 당사자가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
데이터 플랫폼형: 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통해 상대방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

해외 입법 동향 및 논의

□ 산업 데이터는 **업종별 데이터의 종류, 형태, 이해 관계자 등이 복잡 다양**하고, **국내외에서 관련 이슈들이 시시각각 제기**됨에 따라

○ 산·학·연 전문가들을 통해 **주요 이슈들을 파악·분석**하고, 이를 **가이드라인에 반영**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이러한 취지하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금년 2월 EU에서 발표한 **데이터법(Data Act)에 대해 전문가 발제 및 논의를 진행**하였다.

< EU 데이터법안 주요내용 >

▸ (배경) 사물인터넷(IoT)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의 법적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황으로 제조사의 데이터 독점을 방지

▸ (주요내용) IoT 기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해 개인 및 중소기업의 권한 및 접근성 강화

- (B2C) IoT 제품 사용자를 데이터 생산 기여 주체로 설정하고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성 보장
- (B2B) 대기업 IoT 수집 데이터를 중소기업에 제공(공정 계약 모델 개발 및 불공정 계약 규제)
- (B2G) 국가 비상사태 시, 기업은 정부에 데이터 무상 제공 의무 부여

□ 주요 논의 내용으로,

○ 동 법안에 따를 경우, EU에 수출하는 국내 IoT 제조기업도 **EU 역내에서 생산된 산업 데이터 공유를 요청**받을 수 있고, 이에 따른 **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기업 차원의 대응책 마련**이 필요

○ 국내에서도 자동차, 가전 등을 제조·판매·사용하는 과정에서 **수집되는 데이터의 이용권한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**

○ **대기업-중소기업간 데이터 공유 방안, 불합리한 거래 관행 사례 및 개선방안** 등 논의

향후 계획

□ 한편, **가이드라인 워킹그룹**은 1차적으로 초안이 마련되면 **민간 및 관계부처 대상으로 공개 의견수렴**을 진행하고, 업종별 쟁점사례 추가 발굴 등 지속 보완하여 **하반기 제정 완료할 계획**이다.

○ 가이드라인은 제정 이후에도 **국내외 환경변화,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지속 업데이트**할 예정이며,

○ 온라인 의견수렴을 위해 **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홈페이지**(www.idx.or.kr)에 **가이드라인 의견수렴 메뉴를 개설**하였고, **가이드라인 내용도** 진행 과정에 따라 **순차적으로 공개**할 예정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디지털전환추진팀 채은실 주무관(☎ 044-203-454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